회의명	제4회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3년 11월 30일(목) 15:30 ~ 17:00 , 자치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 12명 중 8명 참석 참석교직원 : 0명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상정안건

1. 2023학년도 겨울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2.「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안)

심의결과

1.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가. 발언내용

○ 위원장(ㅇㅇㅇ): 1일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사항 없음

나. 결정사항: 1일로 결정(찬성 8표, 반대 0표)

2. 2023학년도 겨울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가. 발언내용

○ 제안자(ㅇㅇㅇ): 제안설명

○ 위원(ㅇㅇㅇ):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비는 전원 수익자부담인가요?

○ 제안자(ㅇㅇㅇ): 원칙은 수익자부담이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무상입니다.

겨울방학 급식업체는 현재 모니터링 및 실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 단계이며, 급식방법은 교실에서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식판에 음식을 배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ㅇㅇㅇ): 1식 단가 6,0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데 어떠신지요?
수익자 부담경비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질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위원(ㅇㅇㅇ):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모니터링도 세심하게 실시하고 있고,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과도 수시로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맛이나 위생 그리고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특별하게 제기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단가 10% 이내 급식비 상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자(ㅇㅇㅇ): 최종선정단계 업체는 현재 노암초, 교룡초 등 돌봄교실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위평도 좋고, 모니터링 갔을 때 작업 공간도 깔끔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6년 전에는 우리학교 저녁돌봄 급식도 실시했던 곳입니다.

○ 위원(ㅇㅇㅇ):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이라 양은 부족하지 않지만 수요가 적다보니 적극적으로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결정(찬성 8표, 반대 0표)

3.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안)

가. 발언내용

제안자(ㅇㅇㅇ) : 2023.9.에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교육활동침해유형'을 학교규칙에 명시하여 추후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규칙 외에도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학생지도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의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권보호위원회 길라잡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학칙공포 및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규칙의 ‘제 9장 포상 및 징계’를 기존 내용과 학생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예시안을 반영하여 ‘제 9장 학생 생활 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4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25조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2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는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제 27조(교사의 권한), 제 28조(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제 28조 2항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규정’과 ‘물품 분리보관에 대한 규정’은 심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결정합니다.
제 29조(포상 및 추천 등)은 기존의 학교규칙 내용이며 제 30조(징계의 원칙) 제 3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제 32조(징계의 방법), 제 33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제 3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제 3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제 36조(사후 조치)는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학교규칙의 ‘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 37조(교육활동침해행위)에 교육활동침해행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권보호매뉴얼’과 관련 법령을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학교규칙 재·개정 위원회와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규칙 개정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동의함’, ‘지지함’의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규칙 재·개정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의 내용과 범위, 학생 징계 및 선도의 절차가 자세히 나타나고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대해 명시되어 학생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규정」의 3호-가에서 ‘교실 앞문 앞 복도’에 분리하는 것은 모욕주기 등으로 비춰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복도에서 혼자 있기 쉬우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있는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품의 분리보관에 대한 규정]에서도 분리기간에 대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과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 제안이 있엇습니

다.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ㅇㅇㅇ):'3호-가'의 교실 앞문 밖 복도로 분리하는 것은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생지도의 실제적은 효과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지도 교원이 있는 장소로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위원들 :동의합니다. 관련 규정에 학생을 분리하더라도 '학생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ㅇㅇㅇ) : 3호지도는 1,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호 지도에서 이미 여러 번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해 지도를 받은 상태일 것이므로 계속해서 학급에서 갈등상황을 키우기 보다는 분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우리학교는 이전부터 이런 수업방해행동에 대해서 전환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분리 장소,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의 세부 내용이 이미 전환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생 전환교실 운영 규정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3호-나'의 ②항은 '3호-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3-가에서 복도로 분리하는 것을 바로 전환교실로 분리한다고 하면 '3호-나'의 ②항은 삭제하고 3-가와 3-나의 분리장소,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의 내용을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학습지원의 내용은 현재 전환교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분리장소와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현재 전환교실의 내용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리장소에 대해서 전환교실이 여러 곳이고 학교 인력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학교장이 지정하는 전환공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전환공간으로 이동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교사가 전환공간 운영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 후 전환공간 운영자가 학생을 인계하여 전환공간으로 이동'으로 기존의 교직원에서 전환공간 담당자로 학생 인솔 및 관리 주체를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3호와 4호 모두 교실에서 수업방해행동이 심해서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분리장소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일관되면 좋겠습니다. '4호-가'의 지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전환교실에서 다른 분리조치들과 동일하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전환공간에서 지도에 불응하

는 경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ㅇㅇㅇ) : 지난 3년간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전환교실에서 안정을 찾은 후 교실로 돌아갔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도에 불응하고 안정되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인계를 한 경우가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전환공간에서 지도에 불응 시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은 기존의 전환교실 운영계획에도 있는 바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포함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기존의 전환공간에서도 전환공간에서의 지도에 불응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인계를 요청한 만큼 현재의 규정에도 3호, 4호 지도에 불응시 학부모에게 인계를 요청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ㅇㅇㅇ) :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규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ㅇㅇㅇ) : 다음으로 [물품의 분리보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ㅇㅇㅇ) : 1항의 분리기간에 '수업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4항은 분리기간이 3일인 만큼 1항은 1일이 적당해 보이며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수업시간이라는 것은 매 수업시간이 아닌 '학교의 모든 수업이 끝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ㅇㅇㅇ) : 1항은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그 밖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매 수업시간이라면 매 수업시간마다 3회째 주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보관한 뒤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다시 다음 시간에 3회째 주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등 생활지도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1항에서의 수업시간은 모든 수업시간을, 수업 종료는 모든 수업이 종료한 뒤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2~4호의 분리기간 3일에 대해서는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3일이 타당합니다. 은행 등의 공공기간에서도 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기도 하고 학생의 생활지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부적절한 물품을 학교로 가져왔기 때문에 분리보관을 하는 것이므로 주말 공휴일 등으로 실제로 학교 생활 중 분리하는 기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3일이 적절합니다. 물품보관일지는 보관물품이 귀중품일

수도 있으므로 언제, 어떤 사유로 보관을 했고 누구에게 돌려줬는지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물품반환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돌려달라는 의견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품을 맡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이고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해서 취하는 조치인 만큼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로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ㅇㅇㅇ) : 학생이 물품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교사와 대치상황이 될 것이며 수업이 멈추는 갈등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품제출에 불응하여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전환공간으로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1항의 경우라면 휴대전화 등의 물품 사용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준 상황이므로 수업 방해행동이 지속된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것이므로 전환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4항의 경우는 부적절한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서 물품 제출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환교실로 배치 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ㅇㅇㅇ) :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ㅇㅇㅇ) : 제 10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학교규칙 개정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ㅇㅇㅇ)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서 앞서 보완된 내용과 함께 보면 학생생활과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령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ㅇㅇㅇ) : 안건 제안자는 검토 및 보완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요

○ 제안자(ㅇㅇㅇ) :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규정]에 대해서 3호, 4호 지도 모두 분리 장소(시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전환공간', 절차 및 유의점은 '교사가 전환공간 운영자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전환공간 운영자가 인계하여 학생을 전환공간으로 이동'으로 정합니다. 4호 지도에 대해서는 '절차 및 유의점'에 '학부모에게 지도시간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타 사항에 '전환공간에서

지도 불응시 학부모 인계', '3호, 4호 지도 불응시 학부모 인계'를 명시합니다. [물품의 분리보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1항의 분기기간은 '하교 시간 전'으로 분리 방법에서 반환은 '하교 시간'에 돌려줌으로 합니다. 2~4항의 분기 기간 3일에 대해서는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분리 방법 중 학부모 반환에 관한 규정에 '학생을 통한 반환은 불가하며 학부모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학생이 물품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전환공간으로 배치'함을 명시합니다.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결정(찬성 8표, 반대 0표)

기록자 : 간사 김해련(서명)